
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1.

발의자 : 설훈 · 김영진 · 이석현

이용득 · 조승래 · 오영훈

유은혜 · 김상희 · 안민석
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움. 그러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.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자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28조).
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시행계획”을 “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시행하여야”를 “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⑨ 제7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”를 “시·도지사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「식품 산업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식 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한다. <u>이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	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후단 삭제>
⑤ (생 략)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차별 <u>시행계획</u> 을 수립· <u>시행하여야</u> 한다.	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<u>시행계획</u> <u>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<u>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</u> -----.
<u><신 설></u>	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 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 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 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
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2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 흥청장, 소속 기관의 장, 특별 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(생략)</p>	<p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 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⑨ 제7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,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2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시·도지 사에게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